

의안
번호

499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9. 05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499호
- 다. 제출일자 : 2025. 08. 18.
- 라. 회부일자 : 2025. 08. 27.

2. 제안이유

- 생활임금 산출시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서울 권역 근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생활임금을 의결하기 위하여 결정 기한을 변경하고 “고시”를 명문화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의 결정 기한 변경 및 “고시” 명문화(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최저임금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7. 10. ~ 2025. 07. 30.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활임금액 산정을 위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고시를 명문화하여 행정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은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조례는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및 다수 자치구가 9월 중순에서 12월 사이에 결정·고시하고 있어 타 자치구와의 비교·검토에 한계가 있으므로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정기한을 9월 30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안 제5조제1항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 한다.

- 또한 기존 조례상 ‘결정하여야 한다’는, 고시 시점이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법령인 「최저임금법」 제10조¹⁾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체 없이 고시한다’로 함으로써 결정과 고시 간의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자 하는 것으로 보임.

1)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생활임금 결정 기한을 현실적 시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결정 추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고시’ 절차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결정된 생활임금이 즉시 공개되고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생활임금 결정·고시 관련 자치구 조례 현황

구 분		내 용
9.10.	성동구	매년 9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서대문구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고,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9.30.	강남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금천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영등포구	매년 9월 30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대략 10.20.	송파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중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10.31.	구로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2.31.	종로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강동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강북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강서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관악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광진구	매년 12월 31까지 고시한다.
	노원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도봉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동대문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동작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마포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서초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양천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용산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은평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중랑구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